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 인	2 인
재적임원	8 인	2 인
참석인원	6 인	2 인

학교법인 우석학원

제 656회 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25년 4월 29일 11:00 ~ 12:10 (회의소집일 : 2025년 4월 11일)
2. 장 소 : 전북일보사 회장실
3. 임원 출결사항
 - 참석 임원
 - 이사(6인): 서창훈, 김남곤, 차덕호, 황재식, 신태용, 함우식
 - 감사(2인): 서갑두, 김춘원
 - 결석 임원
 - 이사(2인): 장세균, 박혜숙
4. 심의안건 : 1안 2024학년도 결산(안)
 - 2안 정관 개정(안)
 - 3안 우석대학교 규정 개정(안)
 - 4안 우석대학교 입학정원 조정(안)
 - 5안 전임교원 소속변경(안)
 - 6안 2024학년도 기부금 수증 (안)
 - 7안 보수지급기준 변경(안)
 - 8안 글로벌30대학 연합대학 추진(안)
5. 개회선언

성원보고와 함께 의장이 개회선언 후 사무국장은 전차회의록을 낭독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참석 이사 전원 이의 없음을 보고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다.
6. 심의안건
 - 가) 제1호 의안: 2024학년도 결산(안)

서 창 훈	황 재 식	함 우 식
-------	-------	-------

의 장: 제1호 의안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사무국장: (유인물을 배부하다) 2024학년도 법인회계 및 우석대학교회계, 우석대 의료원회계, 우석대학교부설우석유치원회계, 한국소리문화의전당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과목별로 상세히 구분 설명하다.

■ 2024학년도 결산(안)

(단위: 원)

구분	수입	지출	비고
법 인 일 반 회 계	734,859,025	734,859,025	-
법 인 수 익 회 계	9,425,595,277	9,425,595,277	-
법 인 누 리 컴 퍼 니 회 계	81,123,944	81,123,944	-
우 석 대 학 교 교 비 회 계	95,652,497,246	95,652,497,246	-
우 석 대 학 교 의 료 원 회 계	6,167,867,123	6,167,867,123	-
우석대학교 부설유치원 회계	1,444,000,582	1,444,000,582	-
한 국 소 리 문 화 의 전 당 회 계	6,185,472,828	6,185,472,828	-

의장이 본 건에 대한 심의 결과 이의유무를 묻자 신태용 이사의 동의와 황재식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모두 동의하여 의장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나) 제2호 의안: 정관개정(안)

의 장: 제2호 의안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사무국장: 우석대학교 직제개편과 우석대부속한방병원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직급삭제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고자함을 설명하다.

■ 정관 변경주요내용

- 제90조의2(학장,대학원장)제2항 교원의 직급 명시(부교수 이상)
- 제91조(하부조직)제1항 전주RISE사업단 RISE사업단으로 명칭 변경
- 제91조(하부조직)제4항 교원 및 직원의 직급 명시
- 제91조(하부조직)제6항 문구수정
- 제91조의3(산학협력단)제4항 교원 추가(조교수이상)
- 제91조(하부조직)제3항~제6항 교원 및 직원의 직급 명시 및 전면개정
- 제93조(우석대의료원)제3항~9항 직원 직급 삭제 등 전면 개정
- 별표3 의료원직원 연봉제 전환에 따라 직군에 따라 정원 조정

의장이 본 건에 대한 심의 결과 이의유무를 묻자 차덕호 이사의 동의와 함우식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모두 동의하여 의장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서	항	훈	황	재	식	함	우	식
---	---	---	---	---	---	---	---	---

다) 제3호 의안: 우석대학교 규정 개정(안)

의 장: 제3호 의안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사무국장: (유인물은 배부하다)우석대학교 교무위원회 논의·심의를 거친 규정을 개정 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주요내용

- 「직제규정」 개정 건

- 대학원 학칙 개정(박사과정 설치)에 따른 직제규정 상 기구표에 표기
·개정: 제36조(기구표) 전주캠퍼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한국어교육학과' 표기
- 학장 및 대학원장, 각 부속기관의 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 정비
- RISE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직제 변경
·개정: 제13조(대학원장, 학장), 제16조(총장직속기관장), 제28조(조직), 제29조(부속기관장)
→ 보직자의 신분 및 직급에 대한 세부사항 명시

- 「교원인사규정」 개정 건

- 전임교원의 신규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채용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준 및 절차 사항을 명시, 불필요한 서류항목 삭제
·개정: 제12조(신규임용의 방법 및 절차), 제12조의2(특별채용), 제15조(신규임용 서류)
→ 신규임용절차 제시 및 특별채용에 관한 세부항목 명시, 불필요한 서류 삭제 및 조정

의장이 본 건에 대한 심의 결과 이의유무를 묻자 황재식 이사의 동의와 김남곤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모두 동의하여 의장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라) 제4호 의안: 우석대학교 입학조정(안)

의 장: 제4호 의안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사무국장: 학사구조개편을 위해 모집단위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조정 하고자 모집중지 대상학과 교원 및 학생과 총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평의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모집단위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 승인신청이 있음을 설명하다.

■ 2026학년도 학사구조 개편 및 정원 조정 결과

2025학년도	2026학년도
• 8개 단과대학 43개 학과, 4개 학부 • 입학정원: 1,487명 - 전주캠퍼스: 31개 학과, 3개 학부 (1,162명) - 진천캠퍼스: 12개 학과, 1개 학부 (325명)	• 7개 단과대학 37개 학과, 6개 학부 • 입학정원: 1,487명 - 전주캠퍼스: 28개 학과, 3개 학부 (1,117명) - 진천캠퍼스: 9개 학과, 3개 학부 (370명)

■ 모집단위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조정 내용(붙임자료 참고)

의장이 본 건에 대한 심의결과 이의유무를 묻자 신태용 이사의 동의와 함우식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모두 동의하여 의장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서 창 훈	황재식	함우식
-------	-----	-----

의장이 본 안건은 사립학교법제18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8조의2에 의거 공개하지 않고자 함을 설명하자 참석이사 모두 동의하다.

마) 제5호 의안: 전임교원 소속변경(안)

의 장: 제5호 의안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사무국장: 2025학년도 전임교원 소속 변경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심의를 거쳐 '교원의 모집단위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교원 소속변경 제청이 있음을 설명하다.

■ 전임교원 소속 변경 명단

현직		성명	변경	발령일
소 속	직급		소 속	
수학교육과	교수	강영택	교육학과(일반)	2025.05.01.
한의예과	교수	김운종	교육학과(일반)	2025.05.01.
수학교육과	교수	최은아	한의예과	2025.05.01.

의장이 본 건에 대한 심의결과 이의유무를 묻자 김남곤 이사의 동의와 차덕호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모두 동의하여 의장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바) 제6호 의안: 2024학년도 기부금 수증(안)

의 장: 제6호 의안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사무국장: (유인물은 배부하다)2024학년도 기부금 수입에 대한 내역을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하다.

■ 주요내용

(단위: 원)

구분	건 수	금액
법 인 회 계	현금 13건	383,360,000원
우 석 대 학 교 교 비 회 계	현금 179건	543,145,400원
	현물 6건	59,955,393원
우 석 대 학 교 의 료 원 회 계	현금 28건	12,430,000원

의장이 본 건에 대한 심의 결과 이의유무를 묻자 신태용 이사의 동의와 황재식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모두 동의하여 의장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사) 제7호 의안: 보수지급기준 변경(안)

의 장: 제7호 의안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서	창	훈	황	재	식	김	태	용	식
---	---	---	---	---	---	---	---	---	---

사무국장: 우석대학교 부속한방병원의 보수지급기준 변경사항(별첨)에 대하여 설명하다.

■ 주요내용

- 산후조리원 폐원에 따른 관련 수당 삭제
- 직책수당 지급대상 세부기준 명시
- 수간호사 직책수당 신설

의장이 본 건에 대한 심의결과 이의유무를 묻자 함우식 이사의 동의와 김남곤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모두 동의하여 의장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아) 제8호 의안: 글로컬30대학 연합대학 추진(안)

의 장: 제8호 의안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사무국장: 우석대학교와 군장대학교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글로컬 대학사업을 공동으로 유치·추진하기위해 동반 성장하고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내용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2025.04.30.까지 양교 법인 이사회 승인을 받기로 하였음을 설명하다.

■ 협약 주요내용

- 공동의 단일의사 결정 거버넌스 구축
-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 공동 추진
- 공동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공통방안 마련
- 학술, 정보, 교육시설, 인력 등의 상호 교류
- 각종 교육, 연구사업의 공동 참여 및 지원협력
- 교육 및 연구 장비, 시설의 공동 활용
- 특화분야 사업단·연구소의 공동 운영
- 기타 상호 합의에 의한 협력 사항

의장이 본 건에 대한 심의결과 이의유무를 묻자 차덕호 이사의 동의와 신태용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모두 동의하여 의장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이상으로 심의 및 보고를 마치고 의장이 회의록 간서명을 해주실 3명의 이사를 의장, 황재식 이사, 함우식 이사가 간서명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자 참석이사 모두 이에 동의하다.

7. 폐회선언(12시 40분)

의 장 : 이상으로 제656회 회의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폐회를 선언하다.

서 창 훈	황 재 식	함 우 식
-------	-------	-------

학교법인 우석학원 이 사 장 서 창 훈 서 창훈

이 사 김 남 곤 김남곤

차 덕 화덕호

황 재 식 황재식

신 태 용 신태용

함 우 식 함우식

감 사 서 갑 두 서갑두

김 춘 원 김춘원

서 창훈

황재식

함우식

「우석학원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90조의 2(학장, 대학원장) ①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③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④학장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0조의 2(학장, 대학원장) ①좌 동 ②학장과 대학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좌 동 ④좌 동
제91조(하부조직) ①총장직속으로 비서실 홍보실, 인권센터와 (전주)RISE사업단, (진천)RISE사업단, LINC3.0사업단, 특성화추진단, 대학일자리본부, 창업지원단, 교육혁신본부, 국제교류원, 글로벌30추진본부, 스포츠단, 새만금연구단을 두고, 진천부총장 직속으로 지산학융합원을 둔다. ②전주캠퍼스에는 교무처, 기획처, 입학처, 학생취업처, 사무처를 두고 진천캠퍼스에는 교학처를 둔다. ③각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처장, 사무처장은 3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전주)RISE사업단, (진천)RISE사업단, LINC3.0사업단, 특성화추진단, 대학일자리본부, 교육혁신본부, 국제교류원, 창업지원단, 글로벌30추진본부, 스포츠단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새만금연구단, 인권센터, 지산학융합원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비서실, 홍보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7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비서실, 새만금연구단, 인권센터, 글로벌30추진본부, 지산학융합원의 장은 외부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⑤각 처와 단, 본부, 원 및 진천캠퍼스에는 하부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7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제91조(하부조직) ①총장직속으로 비서실 홍보실, 인권센터와 RISE사업단, 진천RISE사업단, LINC3.0사업단, 특성화추진단, 대학일자리본부, 창업지원단, 교육혁신본부, 국제교류원, 글로벌30추진본부, 스포츠단, 새만금연구단을 두고, 진천부총장 직속으로 지산학융합원을 둔다. ②좌 동 ③좌 동 ④RISE사업단, LINC3.0사업단, 특성화추진단, 대학일자리본부, 교육혁신본부, 국제교류원, 창업지원단, 글로벌30추진본부, 스포츠단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인권센터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진천RISE사업단, 새만금연구단, 지산학융합원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비서실, 홍보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7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비서실, 새만금연구단, 인권센터, 글로벌30추진본부, 지산학융합원의 장은 외부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⑤ 좌 동

서 창 훈

황 대 식

홍 우 석

현행	개정(안)
⑥제1항 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제 및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⑦대학교에 교육, 연구진흥과 학교발전에 필요한 특수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특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⑥제1항 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u>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분장업무 등은</u> 따로 정한다. ⑦좌 동
제91조의3(산학협력단)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법인인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한다.)을 둔다. ②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보할 수 있다. ③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산학협력단에는 하부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7급이상의 직원,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로 보한다. ⑤산학협력단의 주요사항은 총장이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91조의3(산학협력단) ①~ ③좌 동 ④산학협력단에는 하부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u>조교수 이상의 교원</u>, 7급이상의 직원,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로 보한다. ⑤좌 동
제92조(부속기관)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각 부속기관에 장을 두며, 각 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필요에 따라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부속기관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 또는 7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2조(부속기관) ①좌 동 ②각 부속기관에 장을 두며, 각 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필요에 따라 자격을 갖춘 <u>4급 이상의</u>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좌 동 ④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u>조교수 이상의</u> 교원 또는 7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u>⑤각 부속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분장업무 등은 따로 정한다.(신설)</u>
제93조(우석대의료원) ①대학교 산하에 우석대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을 두며, 의료원은 부속병원 및 수익사업체 병원의 업무를 조정 통할한	제93조(우석대의료원) ①~② 좌동

서 창 훈

황 외 석

함 우 석

현행	개정(안)
다. ②의료원에 의료원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전문경영인으로 보한다. ③의료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원장 밑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본부(기획실, 사무처) 2. 한의과대학 부속 전주한방병원·전주우석병(의)원 3. 동서암협진연구소 4.(삭제2025.02.27.) ④기획실장, 사무처장은 교원 또는 5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⑤한방병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⑥한의과대학 부속 전주한방병원에 진료부, 교육연구부, 행정부, 간호과를 둔다 1.진료부장, 교육연구부장, 행정부장 및 간호과장은 교원 또는 7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간호과장은 해당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보한다. 2.각 부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 또는 7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⑦한의과대학 부속 전주한방병원에 전주우석병(의)원을 두고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보한다. ⑧전주우석병(의)원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 또는 7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⑨제3항,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③의료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원장 밑에 다음의 기구를 <u>두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따로 정한다.</u> 1. 본부(기획실, 사무처) 2. 한의과대학 부속 전주한방병원·전주우석병(의)원 3. 동서암협진연구소 4.(삭제2025.02.27.) ④기획실장, 사무처장은 <u>교원 또는 직원</u>으로 보한다. ⑤한방병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u>보한다.</u> ⑥<u>한의과대학 부속 전주한방병원에 진료부, 교육연구부, 행정부, 간호과를 두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u> <u>1.(삭제)</u> <u>2.(삭제)</u> ⑦좌 동 ⑧전주우석병(의)원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u>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u> <u>⑨(삭제)</u>
	부 칙 이 변경 정관은 202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서 창 훈

황 외 석

정민석

(별표 3)

의료원 직원 정원 신규대비표

(개정 2007.7.24., 2014.2.18. 2025.04.29.)

현행		개정(안)	
총 계	240명	총계	180명
일반직원	60명	일반직계	140명
2 급 (참여)	1명	행정	40명
3 급 (부참여)	1명	간호	60명
4 급 (참사)	2명	의료지원	20명
5 급 (부참사)	56명	고용직	20명
6 급 (주사)			
7 급 (부주사)		의무직계	40명
8 급 (서기)		레지던트	30명
9 급 (부서기)		인턴	10명
기술직계	71명		
5 급	4명		
6 급	5명		
7 급	8명		
8 급	20명		
9 급	34명		
의무직계	40명		
5급	18명		
6급	22명		
고용직계	69명		
고용직	69명		

서 창 훈

황 재 석

홍 우 석